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檢討報告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3. 6. 19.

運營委員會 專門委員金玉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檢 計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33호로 2023년 5월 4일 유승용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함으로써 의회 내실화 및 구민 의견 반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한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진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라. 토론회 등의 결과보고 및 결과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5. 1. ~ 5. 6.)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하여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해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견수렴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운영원칙)에서 의장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원칙을 정함.
- 안 제4조(신청 및 승인)는 토론회 등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개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신청서가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또한, 개최를 승인한 경우에는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구의회휴페이지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공고하도록 명시함.
- 안 제6조(진행)는 사회자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7조(결과반영 등)는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를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정 활동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토론회 등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승인한 토론회 등의 개최에 대해서는 개최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지향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정립하고자 하였음.

입법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을 통해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